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0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5.

발 의 자 : 백선희 · 이수진 · 김 윤
서왕진 · 강경숙 · 김재원
황운하 · 박희승 · 이학영
서미화 · 박은정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다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여,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지원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. 특히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,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조기기 및 편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,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지원 의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고,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

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3조)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,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강구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제8조의3(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에 장애인 차별 해소 정책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, 절차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	제23조(정보접근·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 ----- ----- -----

접근·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·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장애의 유형 및 정도,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, 구화,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,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,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신 설>

-----하 여 야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

하 여 아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장애인,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